

1.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65號 1994. 10. 1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시지가조제·공급신고서에 당해 도서·도표등을 첨부하여”를 “공시지가조제·공급신고서를”로 한다.

제5조중 “감정평가사등록수첩”을 “감정평가사자격수첩”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반명합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

정평가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감정평가사실무수습종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반명합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주소의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14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 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별실 또는 훼손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 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반명합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사본 1부
5. 사진(반명합판) 2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가. 규약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가.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등록증(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감정평가사사무소폐쇄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

나. 폐쇄신고사유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등록갱신신청)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감정평가사사무소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1부(합동사무소에 한한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사원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사본 각 1부
3. 사원의 이력서 각 1부
4. 사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5.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합병등의 인가신청서)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

변경·합병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관변경·합병 또는 해산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1부
2.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정관 각 1부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감정평가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취임승낙서 각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3호 중 “인감증명서, 신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별지서식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던 토지대장 등본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각종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복잡한 서식은 간편하게 정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부 제공〉